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2021년도 제 2 차 임시이사회

1. 회의 통지일 : 2021. 3. 17. 수요일

2. 회 의 일 시 : 2021. 4. 5. 월요일 17:00

3. 회 의 장 소 : 법인 회의실

4. 재 적 이 사 : 7명

5. 참 석 이 사 : 이사정원 7명 중 5명 참석

대표이사 김창해, 이사 이승준·최면재·이승제·이형목 참석

6. 의결 정족수 : 참석이사의 과반수

7. 안 건

의안 제1호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정관변경 승인의 건

8. 보 고 사 항

제1호 : 법인 소속 시설 직원 교육 계획 보고의 건

9. 회 의 내 용

◎ 개회선언

(의장 김창해 신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대표이사 포함 이사 5인 참석 확인)

(의장 김창해 신부)

전차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이사 이승준 신부의 전차회의록 낭독)

(의장 김창해 신부)

전차회의록 내용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다. (모든 이사 : 이의 없음을 확인)

◎ 안건처리

의안 제1호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정관변경 승인의 건

- 제안 · 심의 · 의결

(의장 김창해 신부)

의안 제1호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승준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상임이사 이승준 신부)

본 법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등을 준용하여 사업의 종류, 임원의 선임,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해임 등을 제·개정하고, 변경된 기본재산을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아울러 이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현 행	개 정 안	변경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의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_____ _____ _____ _____.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p>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다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지역 자활센터</p> <p>2. 노인복지법 제31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p>6. 제23조의 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p> <p>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p>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p> <p>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p> <p>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 지원센터</p> <p>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p> <p>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노숙인자활시설</p> <p>② 관할 본당 사회복지단체 교육 및 육성지도</p>	<p>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p>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p> <p>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법 제23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p> <p>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p> <p>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p> <p>마.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p> <p>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p> <p>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p> <p>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p> <p>2.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p> <p>3. 사회복지후원사업</p>	<input type="radio"/> 현재 실행하고 있는 법인의 목적 사업 반영 : 미실시 사업 및 중복 내용 삭제 <input type="radio"/> 항, 호, 목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변경 사유
<p>③ 사회복지기관 위·수탁 운영 및 지원 역사회복지사업 참여</p> <p>④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후원사업</p> <p>⑤ 긴급재해 복구 및 구호사업 참여</p> <p>⑥ 삭제</p> <p>⑦ 사회복지에의 관련 의료사업</p> <p>⑧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p> <p>⑨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 학자금, 의료비지원 등의 후원사업</p> <p>⑩ 자원봉사자의 활용사업</p> <p>⑪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p>	<p>4. 긴급재해 복구 및 구호사업 참여</p> <p>5.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p> <p>6. 자원봉사자의 활용사업</p> <p>7. 그 밖의 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p>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u>사회복지사업법</u> 및 관계법규를 따른다.	제9조(회계의 처리) —————— — <u>「사회복지사업법」</u> —————— —.	○ 조문 수정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상임이사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부국장 신부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④ (생략)</p>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p>	○ 상임이사의 선임 방법 변경
<p>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u>사회복지사업법</u>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u>사회복지사업법</u>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 <u>「사회복지사업법」</u> —————— ————— ————— ② —————— <u>「사회복지사업법」</u> —————— ————— —————.</p>	○ 조문 수정  
<신 설>	<p>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신 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현 행	개 정 안	변경사유
	<p>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②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p>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p> <p>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p> <p>3.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p> <p>4. 그 밖의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p>	반영하여 임원의 해임 신설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제4장 이사회	<삭 제>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삭제
<신 설>	제4장 이사회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신설
제23조 · 제24조 (생 략)	제25조 · 제26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 ④ (생 략)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인정하는 때 _____ _____ 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제26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제27조(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 2. (생 략)	제29조(의결 제척사유) _____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현 행	개 정 안	변경사유
<u>제28조</u> (생 략)	<u>제30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u>제5장 수익사업</u>	<u><삭 제></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삭제
<u><신 설></u>	<u>제5장 수익사업</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신설
<u>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 1. ~ 7. (생 략) ② (생 략)	<u>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 「사회복지사업법」————— —————.</u>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u>제30조</u> (생 략)	<u>제32조</u> (현행 제30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u>제6장 법인 사무국 및 사업체의 조직과 운영</u>	<u><삭 제></u>	<input type="radio"/> 장 변경으로 인한 삭제
<u><신 설></u>	<u>제6장 법인 사무국 및 사업체의 조직과 운영</u>	<input type="radio"/> 장 변경으로 인한 신설
<u>제31조 · 제32조</u> (생 략)	<u>제33조 · 제34조</u> (현행 제31조 및 제32 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u>제33조(사업체 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각 산 업체가 정한 규정을 따른다.</u>	<u>제35조(사업체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 업체에서—————.</u>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u>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u>	<u><삭 제></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삭제
<u><신 설></u>	<u>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신설
<u>제34조 ~ 제36조</u> (생 략)	<u>제36조 ~ 제38조</u> (현행 제34조부터 제3 6조까지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u>제8장 공고방법</u>	<u><삭 제></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삭제
<u><신 설></u>	<u>제8장 공고방법</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신설
<u>제37조</u> (생 략)	<u>제39조</u> (현행 제37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u>제9장 보칙</u>	<u><삭 제></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삭제
<u><신 설></u>	<u>제9장 보칙</u>	<input type="radio"/> 조 변경으로 인한 장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변경사유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u>사회복지사업법</u> ,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u> 및 <u>민법</u> 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준용규정) _____ _____ <u>사회복지사업법</u> , 「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u> 」 및 「 <u>민법</u> 」과 _____ _____. _____.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제39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제40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u>제/개정</u> 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제42조(규정의 제·개정) ① _____ _____ <u>제·개정</u>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조 변경 <input type="radio"/> 조문 수정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9</u> (2021.)</p> <p>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를 반영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p>	<input type="radio"/> 신설																											
기본 재산 목록	기본 재산 목록	<input type="radio"/> 경기도 기본재산(건물) 처분허가에 따라 지목, 면적, 취득금액 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번</th> <th>소재지</th> <th>지목</th> <th>면적 (m²)</th> <th>취득금액 (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물</td> <td>4</td> <td>화성시 무송동 328</td> <td>연외조, 시멘트 블록조</td> <td>252.89</td> <td>55,395,6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취득금액 (원)	비고	건물	4	화성시 무송동 328	연외조, 시멘트 블록조	252.89	55,395,6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연번</th> <th>소재지</th> <th>지목</th> <th>면적 (m²)</th> <th>취득금액 (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물</td> <td>4</td> <td>화성시 무송동 328</td> <td>철근콘크 리트조</td> <td>289.16</td> <td>293,486,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취득금액 (원)	비고	건물	4	화성시 무송동 328	철근콘크 리트조	289.16	293,486,000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취득금액 (원)	비고																							
건물	4	화성시 무송동 328	연외조, 시멘트 블록조	252.89	55,395,600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취득금액 (원)	비고																							
건물	4	화성시 무송동 328	철근콘크 리트조	289.16	293,486,000																								

(의장 김창해 신부) 이사 전부님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다.

(의장 김창해 신부)

의안 제1호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보고사항

(의장 김창해 신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승준 이사에게 설명하게 하다.

보고 제1호 : 법인 소속 시설 직원 교육 계획 보고의 건

(상임이사 이승준 신부)

법인 소속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교육, 시설장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 폐회선언

(의장 김창해 신부) 상정 안건의 의결 내용을 확인 후 폐회할 것을 선언하다.

이상 결의를 증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낭독하고 의장은 각 이사와 함께
기명, 날인하다.

2021 . 4 . 5 .

대 표 이 사 김 창 해



상임이사 이 승 준



이 사 최 변 재



이 사 이 승 제



이 사 이 형 뮤

